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
----------	-----

제 출 년 월 일 : 2006.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항목의 근거 항목을 변경하고,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조정하며 종전에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던 무단투기 과태료 및 포상금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자치구의 책무”를 “영등포구의 책무”로 개정 (안 제4조)
- 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전자 지불제도 활용부분” 추가 (안 제8조 ②항 4호, 27조 ②항)
- 다.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기준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 4를 영 제2조제7호, 규칙 제8조의 별표 4로 변경 적용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항목을 변경 (안 제10조 ②항)
- 라.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작성 시 준용할 법규정을 시 조례 제14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으로 변경 (안 제11조 ②항)
- 마.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종량제 실시”로 개정 (안 제14조)
- 바. “색깔”을 “색상”으로 변경하고 특수 규격봉투의 색을 노랑색으로 지정 (안 16조)
- 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정 (안 제27조 ①항 2호, 2항)
- 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 규정 신설 (안 제27조의2)
- 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신설 (안 제29조 ④항)

차. 관련 법규 명칭변경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 규정 변경 (안 제31조①항)

- 생활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개정 (안 제32조, 제32조의2)

타.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폐형광등, 페스티로폼 등
의 항목 추가, 별표 5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개정,
별표 7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8의 무단 투기자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파. 별지 8, 9, 10, 11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서울시 청소과 - 13952(2005.10.10)호의 “무단투기 과태료 인하에 대한 개정
권고”

○ 구청장 방침 117호(2006.2.3)호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조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06. 2.23 ~ 3.15)결과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2006.3.17 심의 (가결 수정안 조례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치구의 책무)”를 “(영등포구의 책무)”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을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을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 조례 제14조”를 “규칙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종량제 실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을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로 한다.

제16조 중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을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으로 하고, 제1호 중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 규격봉투는 녹색, 음식물 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는 노랑색(반투명), 공공용 봉투는”을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 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는 노랑색(반투명), 특수 규격봉투는 노랑색, 공공용 봉투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할 동장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중간집하장)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 다음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구청장은 신고 품목의 수집·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거나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 계좌로 무 통장 입금하여 환불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신고서에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자지불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 다음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대상은 별표 7의 14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2.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

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종류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 투기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당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위반사항은 1건으로 처리한다.

⑥동일인의 신고 시에는 월 20건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u>동법시행령</u>(이하 “령”이라 한다)·<u>동법시행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u>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u>(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u>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u>(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u>폐기물관리법</u>」(-----)·「<u>동법시행령</u>」(-----)·「<u>동법시행규칙</u>」(-----)·「<u>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u>」(-----) 및 「<u>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u>」(-----)-----</p>
<p>제4조(<u>자치구의 책무</u>)① (생략) ② (생략)</p>	<p>제4조(<u>영등포구의 책무</u>)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 (<u>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u>)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대형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u>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u></p>	<p>제8조 (<u>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u>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된</u> -----.</p>
<p>제10조 (<u>사업장폐기물의 처리</u>)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u>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u>에 따라 제7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10조(<u>사업장폐기물의 처리</u>)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규칙 제8조 별표4의 규정 -----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u>시조례 제14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u></p> <p>제14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p> <p>① ~ ③ (생략)</p> <p>제16조 (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p> <p>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 규격봉투는 녹색, 음식물 쓰레기전용 규격봉투는 노랑색(반투명),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p> <p>2. ~ 3. (생략)</p> <p>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p> <p>① (생략)</p> <p>1. (생략)</p> <p>2. <u>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u></p> <p>② <u>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수하고,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배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u></p> <p><u>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규칙 제19조의3 -----</p> <p>제14조(종량제 실시)</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p> <p>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 규격봉투는 녹색, 음식물 쓰레기전용 규격봉투는 노랑색(반투명), 특수 규격봉투는 노랑색, 공공용 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5”와 같으며,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u></p> <p>② <u>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u></p> <p>1. <u>관할 동장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2. <u>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중간집하장)에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 제27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u></p> <p>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 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구청장은 신고 품목의 수집·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p> <p>③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거나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반드시 신고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환불한다.</p> <p><u>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u></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신설〉 ④ 제2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u></p> <p>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제31조(수수료의 감면)</p> <p>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생략) <p>② (생략)</p> <p>제32조(과태료)① 구청장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②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2.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신고서에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p> <p>3.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에는 수수료를 전자 지불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수수료의 감면)</p> <p>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현행	개정
	<p>〈신설〉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p> <p>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 대상은 “별표7”의 14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2.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 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종류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당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위반사항은 1건으로 처리한다.</p> <p>⑥ 동일인의 신고 시에는 월 20건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7호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 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 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 캔, 알루미늄 캔 (음·식용 류)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 병, 기타 병 -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 (공기구,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 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 합성수지 용기 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 및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 류 제외
6. 기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형광등 - 폐건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깨지지 않도록 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스티로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컵라면 용기·도시락 등은 깨끗이 씻어 물기 제거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에게 직접 배출 ※ 수산양식용 폐 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비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비닐봉투 날장을 50매 단위로 묶거나 봉투에 담아 흐트러지지 않게 잘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7.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 제거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패각 류, 통뼈, 각종 차 류 (녹차 등) 찌꺼기, 지나치게 딱딱한 껍질 등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없는 물질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

[별표 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

(단위 : 원)

연번	품 목 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1	오디오본체	대형(높이1M이상)	5,000	
2		소형(높이1M미만)	3,000	
3	오디오스피커	1개당	1,500	
4	오디오장식장		2,500	
5	정수기	20ℓ 이상	5,000	
6		20ℓ 미만	3,000	
7	전기밥솥	10인 이상	2,500	
8		10인 미만	2,000	
9	VTR (DVD포함)		3,000	
10	카세트라디오		1,500	
11	다리미		1,000	
12	다림질 판		1,000	
13	헤어드라이		1,000	
14	선풍기	업소용	2,500	
15		가정용	1,800	
16	전화기		1,000	
17	청소기	가정용	2,000	
18		업소용	3,500	
19	자동판매기	대형	14,000	
20		소형	5,500	
21	냉장고	500ℓ 이상	9,500	
22		300ℓ 이상	7,100	
23		300ℓ 미만	4,800	
24		업소용	15,000	
25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6,000	
26		12인치 이상	3,600	
27	텔레비전 받침		2,500	
28	세탁기	6kg 미만	3,600	
29		6kg 이상	5,000	
30	탈수기		2,400	
31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2,400	
32		높이1m 미만	2,000	
33	가습기		1,500	
34	보일러	16,000cal/h 이상	10,000	

35		16,000cal/h 미만	7,500	
36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37	온풍기	80평 이상	8,500	
38		20평 이상	5,500	
39		20평 미만	3,500	
40	에어컨	80평 이상	9,000	
41		20평 이상	6,000	
42		20평 미만	4,000	
43	난로	전기난로	2,400	
44		석유난로	2,500	
45	팬히터	벽걸이형	2,000	
46	싱크대	60cm 미만	3,500	
47	개수대		4,000	
48	밥상	4인 이상	2,500	
49		3인 이하	1,000	
50	교자상		2,000	
51	쌀통		3,600	
52	녹즙기		2,000	
53	식기건조기		1,500	
54	식기세척기		3,500	
55	믹서기		1,500	
56	김치 독	용기 류 제외	4,000	
57	환풍기	가정용	1,500	
58		업소용	2,500	
59	전자레인지		2,500	
60	가스 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800	
61		높이 1m미만	2,400	
62	가스렌지		2,500	
63	식탁	5인 이상	4,500	
64		4인 이하	3,500	
65		3인 이하	2,500	
66	스탠드 옷걸이		2,000	
67	서랍장	5단 이상	4,800	

68		4단 이하	2,400	
69	화장대		3,600	
70	신발장	높이 120cm이상	3,500	
71		높이 120cm미만	2,400	
72	문갑		3,600	
73	장식장		4,800	
74	찬장, 진열장		3,500	
75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76		10인용 미만	6,000	
77	응접탁자		2,000	
78	장롱	120cm(4자) 1쪽	17,900	
79		90cm(3자) 1쪽	11,900	
80	아기옷장		3,000	
81	소파	1인용	2,400	
82		2인용	6,000	
83		3인용	7,500	
84		4인용	10,000	
85	의자	1인용	2,000	
86		2인용	4,500	
87		3인용	6,000	
88	침대	1인용 세트	11,900	
89		1인용 매트리스	6,000	
90		1인용 침대 틀	6,000	
91		2인용 세트	17,900	
92		2인용 매트리스	9,500	
93		2인용 침대 틀	8,000	
94		유아용	3,000	
95		자석매트	침대 매트리스 규격	침대 가격 적용
96	팩시밀리		3,000	
97	복사기		9,500	
98	세단기		4,500	
99	책장	90cm×180cm 이상	8,500	
100		90cm×180cm 미만	5,000	
101	책꽂이	3단 미만	1,500	
102		3단 이상	3,000	

103	캐비닛		4,800	
104	파일 캐비닛	4단 이상	3,600	
105		3단 이하	2,400	
106	책상	양쪽서랍	8,300	
107		한쪽서랍	4,800	
108		컴퓨터	3,000	
109	피아노	일반	17,900	
110		디지털	5,500	
111	오르간		4,800	
112	컴퓨터본체		4,000	
113	컴퓨터모니터	20인치 이상	3,000	
114		20인치 미만	2,000	
115		LCD	2,000	
116	컴퓨터 자판		1,000	
117	노트북컴퓨터		3,000	
118	프린터	최대 A4 이하	3,000	
119		최대 B4 이상	4,000	
120	카펫	1평당	2,000	
121	장판	1평당	1,000	
122	돛자리	1평당	1,000	
123	전기담요		2,000	
124	이불	1채당	2,000	
125	인형 류	1개당	2,000	
126	장난감 류	1개당	1,500	
127	어항	가로1m높이60cm 초과	6,000	
128		가로1m높이60cm 이하	4,000	
129	목욕탕 수건 합		1,000	
130	재봉틀		2,500	
131	거울	높이 50cm 이상	1,500	
132		높이 50cm 미만	1,000	
133	가방류	높이 50cm 이상	2,500	
134		높이 50cm 미만	1,500	
135	골프가방		3,000	
136	금고		2,000	
137	병풍	2쪽 당	1,000	
138	화분	PVC 2개당	1,000	
139	항아리	높이 30cm 이하	1,000	
140		높이 30cm 초과	2,000	

141	세면대		3,000	
142	욕조		6,000	
143	물탱크	15인용 이상	14,000	
144		15인용 미만	6,500	
145	변기		4,500	
146	비데		1,000	
147	쓰레기통	가정용	1,000	
148		사무실용, 옥외용	2,000	
149	유모차		2,400	
150	보행기		2,000	
151	유아용목마		1,000	
152	시계	대형	2,500	
153		소형	1,000	
154	액자	대형	2,000	
155		소형	1,000	
156	자전거	성인용	3,600	
157		아동용(이륜)	3,600	
158		아동용(삼륜)	2,400	
159	문짝	1개당	2,000	
160	폐목재	1kg당	200	
161	폐플라스틱	1kg당	200	
162	고무통	대형	3,000	
163	타이어	대형(1100mm 이상)	11,000	
164		중형(600~1100mm)	5,000	
165		소형(600mm 미만)	3,000	
166	유리	m ² 당	2,000	
167	오락기	업소용	10,000	
168		가정용	3,000	

과태료 부과기준(제32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 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300	500	7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준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월 미만 경과 시	200	400	600
(나) 3월 미만 경과 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 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나) 음식물류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 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 ^{m³})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75톤(10 ^{m³})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50 ^{m³})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5)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존기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300	500	7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	700	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	600	8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	600	800
(나)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다목 (2)(나)④의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항)	500	700	1,000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 제1항(제3호 제외))	50	100	1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 제1항 제3호)			
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 제3항)	50	100	1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8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 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 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m ³)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150톤(100m ³)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3) 보관 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300	5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온도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시간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500	1,000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500	1,0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	500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 제9항)	100	100	100

부과대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의2 제10항)	100	100	100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24조 제1항 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 제4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25조 제2항)	100	200	300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 제2항)	100	200	30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 제2항 또는 제25조의6 제3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2)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 제3항 또는 제44조의2 제2항)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 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 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 제2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15	20
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15	20
라.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15	20
마. 차량·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30	50
바.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	70	100
15. 생활폐기물을 조례에서 정한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 및 배출하지 아니한 자	10	20	50
나. 종량제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한 자	10	20	50
다. 종량제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담아 묶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	5	5	5
라. 정일정시 배출의무 위반자	10	20	50
16. 폐기물을 무단소각한 자(법 제15조 제2항)	10	20	50
17.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법 제7조 제3항)	30	70	1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8. 감시전문기관에 감시 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 제1항)	100	100	100
19.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4항)	100	100	100
20. 폐기물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100	100	100
21.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2.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30	50	100
23.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2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비고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표 8]

무단투기자 신고방법 및 보상금 지급기준(제32조의2 관련)

지 급 기 준	금 액	비 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한 자	전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로 한다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3 일	
신 고 일 자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 내 역	품 명	규격	단가	수량	기납부수수료	환불 신청액	비 고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고 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동장 귀하</p>							

